

##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

| 사건번호 | 구심 | 년 | 제 | 호 |
|------|----|---|---|---|
|------|----|---|---|---|

1. 당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(피해자 의 )에게 년 월 일  
구조금 원을 지급하였는바,

2. 년 월 일 당 심의회에서 귀소에 수용 중인 가해자 에 대하여 금 원을 구상하기  
로 결정하였으며, (작업장려금, 근로보상금) 중 %를 공제할 것임을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
령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00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

직인

○○교도소(구치소)장 귀하